# 대학원 연구등록 시행세칙

[시행 2019.1.21.]

- 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0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- 제2조(자격)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- 제3조(등록대상) 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학기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② 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 <개정 2009.3.1., 2019.1.2
- **제4조(연구등록금)** 연구등록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%로 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7.9.1.>
- **제5조(제출서류)**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등록신청서를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과주 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학과주임교수는 연구등록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**제6조(학생증발급)**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연구등록을 한 학생에게는 학생증을 발급하여 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7조(자격상실)** 연구등록을 한 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